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한시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5개월 연장(2023년 12월 31일)하고, 일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2제1항 중 “2022년 7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행정안전부, 1명(6급 1명)은 국방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별표 4의2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(제73조의2 제4항 관련) 다음에 “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(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)”을 신설하고, “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(존속기한: 2022년 7월 31일)”를 삭제하며, 4급 이하 “8”을 “7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3조의2(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)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<u>2022년 7월 31일까지</u>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(이하 이 조에서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	제73조의2(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2023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,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(5급 1명)은 <u>행정안전부</u> , 1명(6급 1명)은 <u>국방부</u> , 1명(경감 1명)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행</u> <u>정안전부</u>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· ⑥ (생 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4의2]

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73조의2제4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 <u>옛전남도청북원추진단(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)</u> <u>옛전남도청북원추진단(존속기한: 2022년 7월 31일)</u> • • 4급 이하	• <u><신 설></u> <u>옛전남도청북원추진단(존속기한: 2022년 7월 31일)</u> • • <u>8</u>	• <u>옛전남도청북원추진단(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)</u> <u><삭 제></u> • • <u>7</u>	+옛전남도청북원추진단(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) -옛전남도청북원추진단(존속기한: 2022년 7월 31일) -1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0